

우: 04427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46길 37[http://www.kma.org]/전화(02)6350-6536 전송(02)793-8702
의무법제국장 광석철(6573)/ 의무팀장 박일현(6540)/ 팀원 조시형(6536)/ E-mail: kmamedi@naver.com

문서번호 대의협 제0688-13841호

시행일자 2025. 3. 21.

수 신 수신처 참조

참 조

제 목 「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개정
시행 재안내(보건복지부)

1. 귀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관련근거 :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-1839호(2025.3.19.)
우리 협회, 대의협 제0688-12946호(2025.2.27.)

3. 보건복지부에서는 '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'을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우리 협회에 다시 알려온바, 이를 전달드리오니 귀회 소속 단체 및 회원에게 재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다 음 -

○ 재안내사항(* 세부내용 붙임 참조)

시설 용도	바닥면적	(변경전) 시행일	(변경후) 시행일
② 가목 (8) - 의원, 치과의원, 한의원, 조산원 및 산후조리원	100㎡미만	2025.9.20.	2025. 3. 20. (연면적 2,000㎡ 이상) 2025. 9. 20. (연면적 2,000㎡ 미만)
	100㎡이상 500㎡미만	2022.5.1.	좌동
- 의원, 치과의원, 한의원	500㎡이상	2005.7.1.	좌동

○ 개정·시행일 : 대통령령 제34892호, 2024. 9. 19. 공포, 2025. 3. 20. 시행

※ 붙임 : 보건복지부 공문 및 붙임자료. 각 1부. 끝.

대한의사협회장

“국민의 건강과 행복, 의협이 함께 합니다”



수신처 : 각시도의사회장, 대한의학회장(26개 전문과목학회장), 대한개원의협의회장
(각과개원의협의회장), 대한병원의사협의회장, 대한전공의협의회장, 대한공
중보건의를사협의회장, 한국여자의사회장, 대한병원장협의회장